

## 【 15 】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정

제출년월일 : 2004년 12월 일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정이유

- 양주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방향을 확립하고 환경주체가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양주의제21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의제21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양주의제21설치·운영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제1조 내지 안제3조)
- 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안제4조, 안제5조)
- 다.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안제6조 내지 안제9조)
- 라. 협의회의 운영(안제10조 내지 안제15조)
- 마. 재정지원(안제16조 내지 안제21조)

##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양주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양주의 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의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주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양주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양주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 및 산업체, 여성계, 청소년, 농민, 시민사회단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한다.

제8조(사무국) ①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기타 협의회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 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조금 지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강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자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정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 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주시양주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제정

### □ 제정이유

- 양주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방향을 확립하고 환경주체가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양주의제21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의제21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양주의제21설치·운영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제1조 내지 안제3조)
- 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안제4조, 안제5조)
- 다.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안제6조 내지 안제9조)
- 라. 협의회의 운영(안제10조 내지 안제15조)
- 마. 재정지원(안제16조 내지 안제21조)

### □ 조례제정(안) : 별첨

####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2조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

#### □ 사전예고결과 :

- 2004년11월9일~1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환경부)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8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 및 시·주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체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건전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체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 ④ 주민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주조직인 단체를 지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협조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⑤ 주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체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주민·민간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제9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계획목표의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의 참여

제12조(주민의 참여)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민간단체·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성실히 힘으로써 주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환경조사결과 및 환경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정보공개조례」 등에 의한다.

## 제4장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

제15조(자연환경보전) ①자와 주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양주시환경기본조례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해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해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도록 할 것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전문성 확보) ① 시장은 지역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②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③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④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은 제13조에 따른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민·사업자·민간단체·연구기관 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주시환경기본조례

③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이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 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 통보

1. 정책총괄과-947(2004.5.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지방의 제21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04.2월말 현재까지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90.4%인 22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 제21을 수립완료 하였거나 수립중에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3. 지방의 제21추진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34개(13.6%)에 불과하여 구체적 실천을 위한 추진기반인 사무국의 구성율이 낮고(44.4%), 예산 확보 등의 곤란으로 지방의 제21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제21전국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지방의 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을 별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5.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표준준칙을 참고하여 조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도 표준준칙에 비추어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를 보완하여 지방의 제21이 「법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보완하였을 경우에는 2004.9.30일 까지 우리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임 『지방의 제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준칙』부본



## 환경부장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종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종량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종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영도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 사상구청장,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달성군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충구청장,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화군수, 용진군수,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을진광역시장, 을진광역시 충구청장, 을진광역시 남구청장, 을진광역시 동구청장, 을진광역시 북구청장, 을진군수,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성남시장, 의정부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광명시장, 평택시장, 동두천시장, 안산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오산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해남시장, 용인시장, 파주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김포시장, 화성시장, 광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여주군수, 연천군수, 가평군수, 양평군수,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홍천군수,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회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청원군수, 보은군수, 을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교촌군수, 음성군수, 문경군수,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예산시장, 예산시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금산군수, 연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담진군수,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청음시장, 남원시장, 함평시장, 온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임川군수, 원북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을진군수, 전라북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교통군수, 보성군수, 해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원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헝성군수, 영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을진군수, 을통군수, 광성남도지사, 청원시장, 예산시장, 진주시장, 진해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통제주군수, 남제주군수

행정주사

이 \* \* 행정사무관

6 1478 정책총괄과장

제출 06/21  
기상

형조자

시행 정책총괄과-1383 ( 2004.06.21. ) 접수 환경보호과-8095 ( 2004.06.23. )

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www.mel.go.kr

전화 02)2110-6673 /전송 02)504-9205

/ nam323@mel.go.kr

/ 공개

## (지방의 제21추진기구명)설치·운영및지원조례

(자치단체명)조례 제○○○호(200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 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자치단체)환경기본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환경기본조례가 없거나 동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기구명)(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명)"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자치단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①(자치단체의 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명)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방의제명)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사무국)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 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정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 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